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창군수

- 1. 사업명:**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
- 2. 총사업비:** 금84,000천원(국 33,600, 도 4,200, 군 12,600), 자부담 별도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별도)
- 3. 신청기간:** 2025. 11. 25.(화) ~ 12. 5.(금) 18:00
-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 접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접수처: 고창군 고창읍 고인들공원길10,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
-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 대기 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http://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우선지원)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22. 5.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기존시설 4종, 5종 사업장 중 부착 의무 미도래(부착 기한 연장 등) 사업장

※ 예산 범위 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 예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우선지원 순위 및 전문기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름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 6. 지원내용 및 세부 지원범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 (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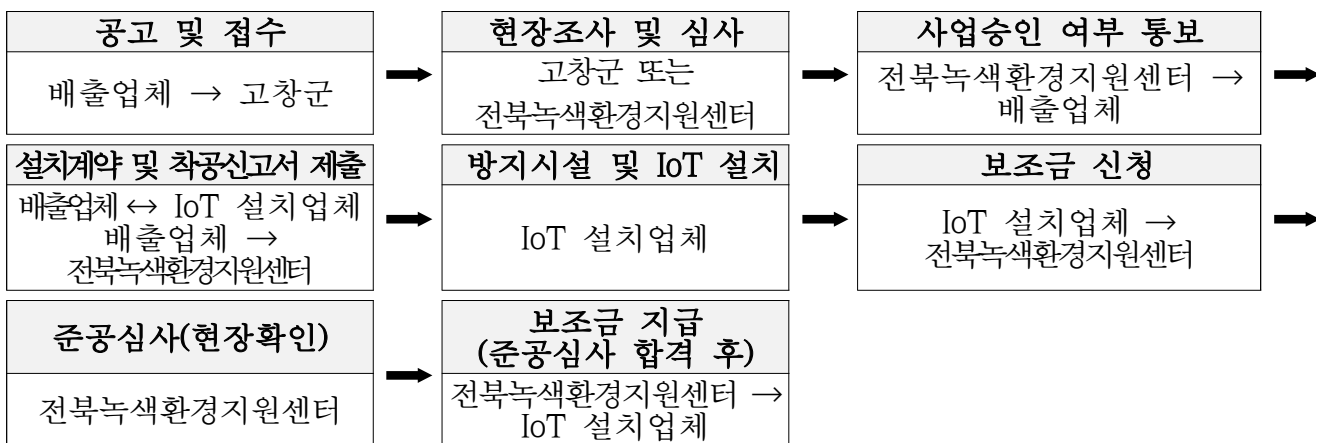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7.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설치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사업장 승인

## 8. 사업진행절차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등을 고창군에 제출



###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협약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고창군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자부담금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직접 신청·수령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서식10)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고창군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

#### ○ (보조금 신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측정기기 설치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확인서를 같이 제출
-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신청 및 수령

〈 보조금 신청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9.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z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z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z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z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 (보조금 환수의 예외)

- 방z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z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 (보조금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후관리) 방z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 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 (주요 구비서류)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부(노란색 정부 피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
- ※ PDF파일 제출 : asb0923@korea.kr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신청 제출 서류

-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서식1)
-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2)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④ 사업장 위치도 1부(서식3)
-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설치업체)
-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⑦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4)
-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서식5)
-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⑫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6)
- ⑬ 보조금 반납 협약서(서식7)
- ⑭ 위임장(서식8)
- ⑮ 보조사업 청립 이행서약서(서식9)

## 나.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고, 착공신고서(서식 9)를 고창군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

-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변경사항 반영
- ② 계약서(사본)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③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 ⑤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다. 보조금 지급 신청

###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 (구비서류)

-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10) 1부.
-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원가계산서 등 포함) 1부.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3) 및 설계도면 1부.
- ⑤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 ⑥ 설치 전, 후 대기자가측정(전단, 후단) 결과서 1부.
- ⑦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 ⑧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 ⑨ 위임장(서식11) 및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포함) 각 1부.
- ⑩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 ⑪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 ⑫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 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서식 13) 1부.
- ⑭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 14) 1부.

## □ 기타사항

- 본 공고 내용은 보조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지침 및 관계 규정 변경,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063-560-287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고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단가 및 설치 규격 1부.
  3. [서식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4. [서식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5. [서식3] 사업장 위치도 1부.
  6.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7. [서식5]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1부.
  8. [서식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9. [서식7]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10. [서식8] 위임장 1부.
11. [서식9]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12. [서식10] 착공신고서 1부.
13. [서식1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1부
14. [서식1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15. [서식13] 보조금 지급 신청서(IoT) 1부.

## [참고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단가 및 설치 규격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및 장치 사양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sup>1)</sup>	0 ~ 600A	0 ~ 500mmH <sub>2</sub> O	-40 ~ 100℃	0 ~ 14pH
오차 <sup>2)</sup>	±5% 이내			
동작온도 <sup>3)</sup>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 <sup>4)</sup>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sup>5)</sup> ) 4 ~ 20mA (표시장치 <sup>6)</sup>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

(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sup>1)</sup>	0 ~ 600A	0 ~ 500mmH <sub>2</sub> O	-40 ~ 100℃	0 ~ 14pH
오차 <sup>2)</sup>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sup>3)</sup>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sup>4)</sup> ) 4 ~ 20mA (표시장치 <sup>5)</sup>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서식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 <sup>3</sup> )*2, 탈사(15m <sup>3</sup> )*2, 흡수제한시설(300m <sup>3</sup> )*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 .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고창군수 귀하

##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3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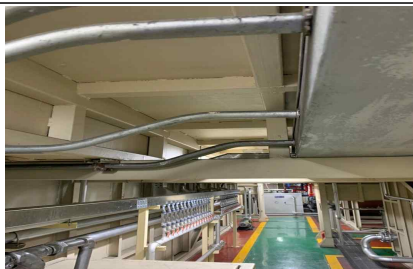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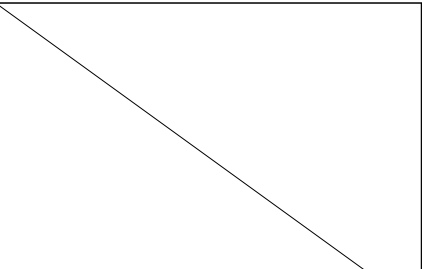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 '예시' )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p>【예시】 방지시설명(용량)</p>	<p>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p>	<p>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p>
		
<p>방지시설 pH계(순환조)</p>	<p>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p>	<p>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p>

###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p>배출시설명(용량)</p>	<p>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p>	<p>탈지시설-2</p>
		
<p>화성처리시설</p>	<p>전류계 설치위치</p>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서식 3】

#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 · 관리 등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위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 · 관리 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5】

#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지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지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5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고창군수 귀하



【서식 7】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 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고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고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서명)

신청인(시공업체)

(서명)

【서식 1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소재지		전화 팩스	
부착기간	2025년 월 일 부터 2025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금		원
보조금 승인액	금		원
자체부담액	금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b>고창군수 귀하</b>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서식 11】**

등록번호		<b>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b>								
제 호										
통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보	②대표자									
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업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2025년      월      일								
⑧부착(개선)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p>「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고창군수 귀하</p>										
<p>※ 구비서류 :</p> <p>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p> <p>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p> <p>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진류계), 방지시설(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별첨****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sup>3</sup>	F0001		2020-01-01

##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C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비 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비 정상	
방지2	pH계	1							정상/비 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비 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